

제43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7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2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2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2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2

(10시16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6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재외투표 편의 제고, 무투표 당선 방지,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및 사전투표기간 조정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0시17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이상 총 16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연일 국정 심의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바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대로, 이견이 있는 건 이견을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외투표 편의 제고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이재강 의원, 이해식 의원,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이재강 의원님 안하고 이해식 의원님 안은 재외거소투표, 즉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윤건영 의원님 안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강·이해식 의원님 안입니다. 내용은 재외거소, 우편투표제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재강 의원님 안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선거일 16일 전까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발송용 봉투를 송부하고, 거소투표자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의 재외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이해식 의원님 안은 이재강 의원님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재외거소투표의 대상을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를 신고를 받아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시 재외선거인 등록 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를 말하고,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의미합니다.

이재강 의원님 안은 현행법상 추가 재외투표소 설치 제한으로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의 경우 재외선거권자의 이동거리나 시간소요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재외선거인거소투표와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이해식 의원안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재외거소투표소의 정의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쪽 보시면 양 개정안은 모두 재외선거권자 등의 투표편의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다른 투표용지 분실·배송 지연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리투표·허위신고 가능성 등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해식 의원안의 경우는 재외선거인에 대한 거소투표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국외 거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서 투표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2쪽을 한번 봐 주시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8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같은 넓은 나라의 경우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대리투표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우편투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우편시스템의 신뢰성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162개 공관을 대상으로, 총 1555명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회송 주체를 공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도착률 및 비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에게 발송된 우편의 10일 이내 도착률은 공관 발송의 경우 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송의 경우 59.7%로 나타났고, 미도착 비율도 각각 9.9%와 6.5%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또 유권자에게 발송된 우편의 10일 이내 도착률을 보면 공관 회송의 경우 86.6%, 선거관리위원회 회송의 경우 53%로 나타났고 미도착 비율도 각각 11.7%와 31.2%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재외거소투표, 우편투표 도입을 근거로 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해식 의원안의 내용인데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재외투표 및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국외부재자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국외부재자거소투표신고를 통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투표편의 제고를 통한 투표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 통합선거인명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거인명부확정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고 있고,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부 작성을 당기지 않는 이상은 이를 활용한 재외투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합선거인명부에는 4400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 선거인이 명부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전 세계 재외투표소에서 활용할 경우 정보유출 등 보안성 문제와 함께 기술적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재외거소투표를 위한 국회의원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조정하는 이유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기한을 5일씩 앞당기기 위해서 당기는 내용입니다.

다.

이와 관련해서 재외선거 시 우편발송 및 회신 시간을 확보하여 재외거소투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외선거투표 등의 도입 여부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쪽입니다.

재외거소투표 사항의 보완·정비 관련 내용입니다.

양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무에 재외거소투표관리를 추가했고, 재외선거투표 방법으로 현재 국내 거소투표에도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재외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관련하여 우편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의 재외거소투표함 투입 시 투표참관인의 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재외투표의 회송과 관련하여 현행은 재외투표는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에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회송 대상 재외투표에 재외거소투표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기표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거소투표도 이와 같은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재외거소투표자의 귀국 후 이중투표 가능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도입 시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 투표용지가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거소투표자가 국내 귀국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 중복투표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외거소투표자의 경우 송부받은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경우에 한하여 귀국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2쪽을 보시면 일련번호 절취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상 일련번호만을 절취하여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용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보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바코드에 일련번호 및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서는 아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련번호만을 절취해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다시 32쪽 보시면 지연도착 거소투표지 처리와 관련하여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에 지체 없이 국내로 재외투표소의 재외투표 및 재외거소투표를 회송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지만 각국의 우편서비스 상황에 따라서 재외투표 국내 회송 이후 지연도착 하는 투표지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현행법 제218조의24제3항의 공판개표의 대상으로 보아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강 의원님 안의 재외선거 시 전자투·개표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재외선거의 어려움 극복과 코로나19 등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투·개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편투표와 마찬가지로 대리투표 및 허위신고의 위험성과 외부의 해킹 등에 의한 결과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8쪽의 윤건영 의원님 안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 3만 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2만 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수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으로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일본대사관 등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 수에 비해 최대로 설치될 수 있는 재외투표소로 인해 그 수가 적어 투표 불편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상한을 확대함으로써 재외선거권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서 추가 설치 기준이 완화될 경우 재외투표소는 현행 43개소에서 75개소로 증가하여 약 32개소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적용 시에 추가투표소 설치확대 주요 공관에 대한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부칙을 보시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거소투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추가투표소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도입됐는데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리성 못지않게 재외투표의 공정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재외선거 유권자의 투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해서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뜻깊은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재외거소투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략 192만~197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재외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해서 현재의 투표율이 다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거소투표의 특성상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가능성 및 비대면 투표방식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다수 국가의 우편시스템이 불안정해서 투표용지 분실이라든지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재외투표소 투표와 재외거소투표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재외공관의 재외선거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인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해식 의원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국외거소투표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외 부재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또 재외투표 회송 이후 도착하는 재외거소투표의 처리 방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가 거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각 선거 때마다 2028년에는 한 80억 원 정도, 2030년에는 99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재외선거의 경우에 대리투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선거와 같은 조사권에 따른 확인조사가 지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편시스템 미비나 우체국 방문 수령 등 국가별 우편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공관인 경우에는 동시 관리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외교부나 재외동포청의 의견도 꼭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쪽,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재외투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선거인 한 4450만 명 정도 이상의 생년월일, 주소, 성명, 성별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선거인명부를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21대 대선 기준 전 세계 182개 공관 223개 투표소에서 국내의 사전투표 통신망과 같은 선거통신망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 외교부라든지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재외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려면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는 국내선거인명부의 확정기한을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개시일인 선거일 전 14일로 조정하는 등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현행 선거법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요.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과 인력 배정 그리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사전투표 때 활용하는 선거 전용 통신망처럼 구축을 해야 하는데 각 공관과 투표소마다 통신망 구축이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인터넷 속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 투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예러가 발생했을 때 국내의 경우에는 유선망을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보충적으로 설치된 무선망으로 지금 바로 복구되는 형편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될 경우 1~2주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실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재외거소투표를 위한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의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강 의원안이나 이해식 의원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선거법 64조에 선거벽보 제출기한을 국회의원선거도 대통령선거처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앞당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외거소투표를 위한 것과는 별다른 상관은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31쪽, 재외거소투표 사항 보완·정비와 관련한 이재강·이해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46쪽, 재외선거 시 전자투·개표 관련 규정 신설, 이재강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 전자투·개표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권의 합의와 함께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8쪽,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개정안 취지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보다 완화된다면 재외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인력이나 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 현재 공관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개정안처럼 재외국민 수가 2만 명 초과할 때 매 2만 명마다 1개소씩 최대 5개까지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안정적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청이 2026년, 금년 1월에 발표한 공관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투표소는 작년 대선 당시 설치되었던 22개 공관 39개 추가 투표소에서 29개 공관 72개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총 7개 공관, 33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공관 외 투표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대사관, 상하이 총영사관, 칭다오 총영사관, 광저우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 투표소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3쪽, 시행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개정안에 따른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 그리고 우편 발송 관련 재외선거 시스템 개발 등 기술적 그리고 실무적 검토와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적어도 6개월, 좀 여유 있게 주신다면 1년 정도 시간을 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안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라·마 사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거소투표 도입 여부, 가변과 관련한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외거소투표 도입이 온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이 1번인 것 같고 그다음은 그와 별개로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요건을 완화할 거냐—현행 3만에서 2만으로 줄이는—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재외거소투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이 저번 선거 때 가장 높았다 하더라도 겨우 10%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거소투표 도입 등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대리투표와 허위 신고 가능성 등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 또 그리고 재외공관에서의 이런 선거 관리에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그런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또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한 수행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무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불신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최근에 보면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문을 각 당에 공문을 발송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발송한 취지가 뭐니까?

얼마 전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4월 6일 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개헌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송한 것이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기자가 4월 5일 날 저희 중앙선관위 담당 사무관께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발의가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답변이 그냥 그렇게 나간 것이고요. 저희들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운용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헌법 제114조에 선관위에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투표법 52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53조에서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3월 6일 날 국민투표법이 개정·공포되고 언론을 통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후에 저희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투표법 규칙도 개정을 했고요. 국민투표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법에 최초로 도입된 재외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시스템 등 국민투표 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운동 관련 규정이 또 적용이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실제로 적용하는 법규 운용기준을 사전에 안내를 한 사안입니다.

법규 해석과 관련해서 중요 사안인 경우에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서 수시로 정당 등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일

발의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8일, 내일까지 헌법개정안이 공고돼야 되고, 대통령이 공고해야 되고 다음 달 5월 4일부터 5월 10일 기간 중에 국회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만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선관위는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투표에서도 항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사무차장님 말씀대로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사무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국민투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안내문을 보낸 시점, 공문 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3월 10일 날 국회의장이 개헌 발언을 했고 대통령이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러 와서—4월 2일 날 하러 왔습니다—거기에서 여야 대표 사전 환담에서 개헌 발언을 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4월 2일 그날,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6시 44분에 선관위에서 운용기준 안내 공문 결재를 하고 4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것도 또 공문 내용에도 보면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에 대한 내용도 참 자세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선관위는 말 그대로 헌법상의 독립적인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하자마자 마치 그것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부랴부랴 공문을 결재하고 발송을 한 것이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마치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 처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20대 대선 때 소쿠리 선거, 21대 대선 때 밥그릇 선거, 9대 사전투표 할 때 투표용지를 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 온 그런 사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 선거조차도 선거관리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국외부재자 거소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저도 재외공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해외 재외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될 때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불안불안, 이것은 정말 불순분자가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투표함이나 이런 쪽을 탈취하거나 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진짜 시한폭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선거관리의 안정성·신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과정,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관리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취지만 좋다고 해서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그 선거관리의 난맥상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 우려는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할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벽히 해소될 수 있을 때 또 그런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차장님, 지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5월 3일에서 5월 10일 정도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5월 4일부터 5월 10일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국민투표안, 지방선거하고 같이 결부돼서 하는데 이것을 재외공관 또는 준비를 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구체적인 그 안내문이나 공문의 내용이 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선관위에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난맥상이나 사고 이런 게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까요?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재외거소투표 도입을 하려는 이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저도 2012년에 재외투표 시작할 때 공관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 구조만 가지고서도, 이게 명분은 좋은데 비용이나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거소투표까지 도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은 정말 전산 부분이 전 세계화가 됐을 때 전자투표나 이런 식으로 가 줘야지 이것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거소투표를 한다 이것은 좀…… 특히 외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재외거소투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반대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게 아니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재외거소투표하고 다르게 재외투표소의 기준이 현행 3만인데 이걸 2만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요건을 완화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식 위원** 차장님, 국내에는 선거인 몇 명당 투표소를 하나 만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보통 60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3만 명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해외에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재외선거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이것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3만에서 세 군데보다는 2만에서 다섯 군데로 늘려 주면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가 선거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정말 재외국민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그 먼 지역까지 가서 투표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 재외선거인들 중에 투표 참여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윤건영 의원안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편의가 더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작년 대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 추정 재외선거인 수 197만 명 중에 25만 8000명이 신고·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20만 5000여 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자 대비로는 79.5%가 투표를 하셨고 재외선거권자 대비로는 10.4%가 투표를 하신 셈입니다.

○정춘생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선거마다 좀 다릅니다.

○정춘생 위원 대선 때는 높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대선 때는 늘어나고요. 국회의원선거 때는 코로나 이런 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추세 같은 걸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면서요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조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차장님,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지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방선거 때는 재외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때만 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국민투표 때문에 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만약에 재외투표를 한다면 국민투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방선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승환 위원 아, 재외투표를 한다면 국민투표 때문에 한다?

그런데 이게 재외국민 수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신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투표소 개수를 내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닌가, 지역에 따라 가지고서 아마 투표 참여율이, 신고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행 규칙에 따라서, 최근에 그 통계에 따라서 재외국민 수에 근거해서 추가 투표소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신고·신청 시기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추가 투표소 장소를 확보하는 그 시간 때문에 기존 통계, 최근 통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전에, 벌써 우리가 몇 번 선거를 했으니까 이

게 예를 들어서 LA 총영사관에서의 신고율, 투표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못 오실 수도 있고, 의외로 대선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나왔다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고율을 가지고서 LA 총영사관의 신고율이 어느 정도 되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이 기준으로 투표소를 몇 개 할 것이냐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적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재외국민 수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6만이다, 7만이다 나오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이……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2만 명 이상 초과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매 2만 명마다 1개 소씩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신고·신청으로 하게 되면 2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투표소……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만 명은 숫자를 줄여야지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지금 재외국민 수만 가지고서 볼 게 아니지 않느냐. 그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LA 총영사관은 몇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신고·신청서 수는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자료는 있겠지요, 물론. 그 자료 한번 내 봐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장님, 지금 재외선거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체 예산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설치할 한다면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국내에 보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6000명 기준으로 국내 투표소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인구밀집지역은 6000명 정도의 예가 납득이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 군 지역의 면 같은 데 있잖아요. 구역은 굉장히 너른데 지금 보통 투표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투표하려면 버스 타고 이삼십 분, 10분, 20분 가야 되는데 투표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선관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 버스 같은 게 하루 몇 대 이상 안 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일준 위원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제도도 만들었는데 본투표에서 너른 지역에 투표장소는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버스가……

요즘 시골에 버스 안 다닙니다. 하루에 한 서너 번 다니면 선관위에서 버스 투입 안 해요. 누가 자기 돈 내고 버스 타고 가서, 가는 데 20분 또 버스 기다리는 데 한 두세 시

간, 만나질 걸려서 투표하고 오겠습니까. 이런 안을 선관위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안 다니는 데는 지금 선관위에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버스 다니는 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최소한 1시간에 한 대 정도는 다녀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높여 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는데 선관위에 이야기하면 그거 반영이 안 돼요. 왜 반영이 안 되느냐?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부터 충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연후에 또 재외국민들도 충분히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투표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투표소 수를 늘리는 것도 말씀……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늘리고 진짜 늘리는 게 어렵다면 셔틀버스라도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요 차가 시골에 하루에 한 서너 번밖에 없는데 이 차 타고 가서 투표하고 또 돌아오려면 두세 시간 기다려서 또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누가 투표를 하려고 합니까?

요즘 인근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승을 해 가지고 하면 또 이것 선거법 위반이다 하니까 그것도 못 해요. 이런 걸 어떻게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높일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셔틀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 간의 합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게 정당 간의 합의를 거칠 이유가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니, 투표율을 올리는 게 어떻게 정당 간의 합의입니까, 그건 셔틀버스 다니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하신……

○서일준 위원 그런데 안 하면 교통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타면 대중교통은 거의 없고…… 하루에 몇 번밖에 없는 대중교통, 이거 대중교통입니까? 그렇게 선관위에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하신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중교통이 있어도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다니는 그 대중교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셔틀버스를 1시간에 한 대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차장님, 제가 49페이지 보니까 재외국민 투표 불편에 따른 설문조사가

있는데 제일 높은 퍼센티지가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확대이기는 한데 그에 못지않게 인터넷투표 도입이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정개특위에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언을 들어 보니까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걸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인터넷투표 관련……

물론 거소로 하거나 아니면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확대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중앙선거위의 태도라든지 업무를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인터넷투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공정성이 담보될 건지, 이것에 관련해서는 검토라든지 연구용역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면 재외국민들 역시 우편투표보다는 인터넷투표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여쭙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국내 투표에서는 다 실물 투표지가 있습니다. 실물 투표지가 다 있는데, 인터넷투표를 하게 되면 실물 투표지가 없어서 나중에 검증이 어렵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재외선거에서 지금 인터넷투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는 국가가 저쪽 동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국가입니다. 거기서 한정되고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투표를 했다가 신뢰성 문제로 다시 폐지를 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인터넷투표를 도입했다가 폐지했다가 재도입하고 자꾸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도 이번 9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국가별 인터넷 환경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편투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투표가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김한규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셔서 김한규 위원님 듣고 이 안건 정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저 하나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김한규 위원 제일 편한 건 말씀하신 인터넷투표가 되면 좋고 장기적으로는 모바일투표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재외거소투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우편투표 관리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재외투표소를 늘리는 게 필요하고 국가적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외투표를 해 본 경험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회사가 쉬지도 않는 데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가서 투표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해외투표라고 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국가가 점차 예산도 확대되고 국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상징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갈수록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차피 법을 3만에서 2만으로 바꾸더라도 공관마다 원래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는 걸 최대 5개까지 하는 거라 특정 공

관이 여서일곱 개까지 늘리는 건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최대 공관 숫자에다가 곱하기 2가 투표소가 늘어나는 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5개 이내로 한정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풀어야 된다. 인원이 많으면, 교민이 많은 지역은 굳이 5개가 아니라 여서일곱 개도 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데는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면적을 기준으로 또 예외를 두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현재 기준으로 인구로 하고……

존경하는 법안소위 위원장님인 윤건영 위원장님의 안으로 우리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고, 저도 서일준 위원님 의견처럼 지방의 투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는 100% 동의한다는 점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발언을 안 하신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강동완 차장님, 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소 추가 설치 등에 선관위 차원에서의 노력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재외투표소 한 곳 설치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지 않아도 서일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투표소 1개당 총 36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 확보나 임차 비용이나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부 들어갑니다. 투표안내요원, 투표사무원, 참관인 그다음에 교통 편의 지원차량, 출장자 여비 그다음에 재외투표장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소 한 곳 추가 설치한다면 얼마나 들까요, 국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외국, 재외투표와 국내 투표를 보게 되면 한 열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일인당 비용으로 봤을 때는.

○김은혜 위원 우리가 더 든다는 건가요? 외국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외국이, 재외투표가 훨씬 많이 듭니다.

○김은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전반적으로 재외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사안이나 저희가 위원회 운영 우선순위하고는 그 시급성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되는 데 있어서의 의견 개진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사전투표의 투표관리관 날인, 현장 날인의 경우에도 비용이 들고 또 인력이 소요된다고 하시지만 같은 투표관리관이라 하더라도 재외투표에서의 비용 추계가 국내가 10분의 1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비용과 인력이 들지 저희가 아직 시뮬레이션 자료를 못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게 저울로 치면 사실상의 무게중심을 선관위가 어디에 두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국내에서도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 또 투표관리관의 현장 날인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서 논의를 전개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서일준 위원님이 재외선거와 국내 선거의 소요 비용 말씀하셨는데요. 재외선거 소요 비용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대 국선 때 122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재외선거 때. 그때 국내에서는 일인당 6300원, 재외투표는 13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21대 대선 때는 그때 궐위선거다 보니까 총예산이 90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국내는 1만 700원, 재외는 4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은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발언을 하지 않으신 임미애 위원님 발언 마지막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재강 의원님의 안은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이고요. 윤건영 의원님 안은 재외국민 수 기준을 완화해서 재외투표소를 좀 더 많이 설치하자라는 안인데 2개가 서로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같이 처리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여건상 재외거소투표는 현실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우편투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2년에 우편투표와 관련한 수·회송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현재 우리 재외투표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되는데 도착이 아예 안 되는 우편물이 원체 많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사례 수가 1555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적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마치고 나면 우편투표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정교하게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착하지 않는 이유는 늦게 도착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게 분실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실될 수도 있고 유권자가……

○임미애 위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지요. 재외투표인이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라면 완벽한데 국외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안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투표 편의를 높이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몫이고 당연히 그 부분은 법·제도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하고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안건은 재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실까요?

반대하시면 반대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처럼 내국인은 1인당 비용이 6300원, 재외는 13만 1000원, 스무 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재외국민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참정권을 높이려고 하면 거기에도 투표소를 더 설치하든지, 인구수만 확실적으로 할 게 아니라 넓은 지역의 장소에, 이런 것도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된 다. 이것 오히려 역차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참정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참정권을 더 높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나가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언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서……

일단 아까 수십 배 차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장님,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1 대 4인 경우도 있고 1 대 10인 경우도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건 제가 정정을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선거마다 다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내국인들의 투표 참여와 참정권 보장에 대한 것은 다른 법입니다. 그것은 다른 법 조항을 개정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도 그 대안을 내셔야 되고 저희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내국인이냐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냐를 어떻게 무게를 재겠습니까, 참정권의 무게를. 그래서 지금은 재외투표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확인하고 만약에 반대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서일준 위원 이것은 좀 보류를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찬반 확실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면 반대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반대라고 확인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법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김은혜 위원** 사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도 뭐였냐 하면 2만 명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더 재외선거권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할지 혹은 지역별로 투표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기한 곳이 높을수록 그 지역별 쿼터를 둔 다음에 거기에 인구 비례를 추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참정권 보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단순한 도식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인 비율을 한번 저희가 감안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장 숫자를 딱 잘라서 여기에 찬성, 여기에 반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검토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검토의견 잘 받았고요.

저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3만을 2만으로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고요. 뭐 처리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 묻는 겁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은 드렸지마는 우리가 최초로 선거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이게 지역별로도 보면, 제가 영국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영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코틀랜드에 한 군데 더 있고 저 있을 때는 영사관에 하나 두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영사관의 투표 참여율하고 그때 에든버러에 있던 투표 참여율하고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데 먼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60일 전에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비율을 보면 참여 의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개소가 더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 투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벌써 2012년에 시작한 거지 않습니다. 2012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3만에서 2만,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질의 겸 의견을 피력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몇 날 며칠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투표합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회사에서 편잔 들어가면서 투표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가 해 줄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외거소투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쟁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처리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지만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나 정부가 그 부분을 받들어 가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야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참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개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저도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이 법은 이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 갑니다만 소위가 이런 식이라면 될 어떻게 할지 참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말씀이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간사님. 잠깐만 발언하지 마시고……

○서일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간사님. 제가 위원장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토론 시간 드렸고 저도 위원으로서……

○서일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간사님,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서일준 위원 아니,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해서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간사님,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제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저도 위원으로서 제 시간을 할애해서 한 겁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지금 추가 설치 분명히 반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니, 시뮬레이션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소위원장 윤건영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그만큼 시간 드렸으면 됐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것을 왜 단순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반대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반대를 반대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니까?

○서일준 위원 아니, 우리 내국인들도 참정권을 더 보장을 해 주자, 같이 하자는 뜻이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국인 핑계를 대면서 이것 반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일준 위원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해당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김은혜 위원 저희 야당 위원 중에 투표소 추가 설치에 반대한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재외국민투표소 추가 설치에 반대하신 거잖아요. 반대한 걸 반대했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춘생 위원 내용적으로는 반대하신 거잖아요.

○조승환 위원 이대로는 반대한다는 거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늘리자는 거지

요.

○**서일준 위원** 지금 시급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고 내국인 투표소도 우리가 검토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지 말까요? 반대하셔 놓고 왜 반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김은혜 위원** 투표소 추가 설치에 반대한 바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진행하지 말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무투표 당선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당선인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현행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서 선거권자 총수의 30%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하나의 지역구에 해당 지역구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찬반투표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당선인을 반드시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찬반투표 결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후보자 확보의 어려움, 행정적 부담 증가 및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직무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의 2 미만 추천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당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구조로 주요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함에 따라 양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보다 적은 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경우 소수 정당의 의회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되 지역구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시·군 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찬반투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별도 투표용지 및 투표개수기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와 행정적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선출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자는 개정 의견의 경우 양당 중심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또 소수 정당의 의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이라는 정당 본연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 찬반투표를 도입해서 선거권자 총수 30%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하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법률안처럼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이나 투표지 분류기 인식을 위해 선관위가 갖고 있는 선거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표가 행해지는 선거구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기만 하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에서는 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 득표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50% 찬성투표가 안 돼서 또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행정적 시간과 비용의 낭비 초래 또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장시간 비선출로 의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서도 후보자가 1인이어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2025년에 결정한 선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일단 저는 그동안 무투표 당선된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어떤 정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투개표 현황에 보면 당선자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당선자 현황에 무투표 당선자라고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당선자 현황에만 올라가 있고 투개표 현황에는, 물론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 있지 않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검색할 때 투개표 현황을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필요한 자료가 투개표 현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경우인데, 선거 자체가 거기에 표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때 여기는 왜 선거구가, 예를 들면 선거구가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도 없고 나도 없고 다 하나 있고 라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거구가 전체 몇 개인데 투개표가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후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실 때, 물론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투개표 현황에 쓸 수 없었던 어려운 점은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곳이 무투표 당선 지역구여서 선거가 없었다라는 표시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

계자료를 볼 때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선거가 있었던 지역, 없었던 지역, 투표 현황, 개표 현황 이것을 다 자료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그 부분이 반영이 가능할지 바로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찬반투표라도 실시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왜냐하면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투표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후보자한테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옷 입어도 안 된다, 선거운동도 안 된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냥 그 선거에서 어떤 참정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로써 저는 기본권이 훼손되는 지경까지 벌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무투표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찬반투표라도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분의 2 미만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3인 선거구에서는 이렇게 되면 1인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인을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1명만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기초의회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율의 김승수입니다.

저는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1인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굉장히 난립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 지역은 사실은 대도시권만 하더라도 후보자 구하기가, 우리가 특정 정당의 당선에 유리한 지역조차도 갈수록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시·구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통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통장 같은 경우에 통장 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보면 경쟁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이게 시·구의원이 누리는 자리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자리……

그래서 애초에 보면 무급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유급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구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 특히 젊은 층이나 이런 쪽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지역에 그래도 그냥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명이라도 나와 가지고 당선자가 나오는 지역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조차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아예 주민 대표자를 그냥 뽑을 수 없는 지역도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 야당의 주장 중에, 저는 저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상반되는 부분들이 거대 여야 정당 때문에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가야지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 도시지역보다 특히 농촌 지역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있고, 소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위적으로 제도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현실을 또 지방자치체의 본질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후보자를 양성하고 키우고 이렇게 해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제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주장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수의 후보자—그러니까 다수 중대선거구제도지요—여기에서 정당 추천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정당의 자유, 앞서서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윤준병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이 법안이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놓은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실을 이 제도로라도 바꿔보자라는 문제의식에서 낸 법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오히려 소수정당의 진출, 무소속의 진출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다양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역시 모르는 말씀이세요. 2006년도에 양당의 독점 비율을 보면 77%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차장님, 2022년에는 94.3%가 되지요? 오히려 양당 소속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 제도가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의 진출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짚고 싶고요.

저는 이 법안을 낸 이유는, 물론 선관위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무투표 당선에 대해서 문제는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찬반투표 실시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찬반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행정편의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나 알권리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찬반투표는, 물론 당장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입을 해서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는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이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당선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출직이 아니예요. 그런데 선출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하고 조례 재개정을 하면서 지역의 모든 것을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아니예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투표 당선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5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시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 고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번에도 정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48명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500명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에 있어서도 제가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이 제도는 그야말로 다당제 그리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 현재 정치적 토양의 한계로, 양당이 다 진출하게 하는 거면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찬반투표든 추천 제한이든 어느 정도는 해야 좀 정치개혁이라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다, 진전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저는 지금 선거 준비하는 내용들 과정 속에서 무투표 당선되게 되면 후보자가 일체의 선거활동을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구요.

특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 또 주민들의 의사가 후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반영 자체가 사실상 정당 간의 구조나 후보 간의 구도 때문에 일체 그런 문제가 개입될 수 있거나 주민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맹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좀 보완한다면 저는 찬반투표라는 용어는 실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찬반하면 50%의 비율을 해서 찬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주민소환을 하게 되면 지금 최소한도 소환의 성립 요건을 3분의 1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인 후보가 제시된 지역의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주민들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저는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서 최소한도 그 대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담보하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1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있어야 최소한 선거라고 하는 틀이 또 주민의 대표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일련의 무투표 당선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찬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주민소환과 같은 수준의 신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에서 좀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지금 현행 선거법 275조에 선거운동의 제한·중지라고 된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은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사실 돈이 얼마 안 드는 선거운동 방법 일부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찬반투표와 유사한 겁니다마는 과거에 1회 동시지방선거 때부터 4회 때까지, 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서는 후보자가 1인일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때 95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도 두 번 그런 사례가 있었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1회 때 4명, 2회 때 22명, 3회 때 12명, 4회 때 2명, 이분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1 득표를 한 경우에 당선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3분의 1 득표를 못 해서 당선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유권자들에겐 그런 절차를 했고 그때 선거운동도 하게끔 그렇게 했었다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자치단체장에 한해서는 그렇게 도입을 하셔도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저희들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무투표가 아니고 3분의 1 득표 규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윤준병 위원님과 임미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투표 당선에 대한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선관위에도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말씀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광역지자체장에 대해서 1인이 나와도 투표를 했고 3분의 1 이상 되는 경우 하는 것을 했다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10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 우리가 선거법이 바뀌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게 재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도 그 입법취지를 봤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행정편의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3분의 1을 넘어서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 정춘생 위원님이 주장하는 찬반투표 이걸 지금 준비하는 데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냥 1명을 놓고 투표만 하는 부분은 사실 시간의 문제나 준비하는 소요는 또 없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무투표 당선에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범위와 그리고 이전의 2006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행했던 3분의 1 조항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거나 반대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법안에 지역구 지방의회의 경우도 같이 찬반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차장님, 그러면 2006년도까지 지방의원도 찬반투표를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만 했습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도입된 이후 저희들이 계속 무투표 당선으로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각 당에서 후보를 최대한 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 490명인가 390명 정도 무투표 당선, 전체적으로 선출직들이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물론 투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지역구 지방의원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건 좀 허들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분의 1 조항과 관련해서도 행정실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단체장 이상까지 3분의 1 조항을 두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3분의 1 조항 두는 것 둘로 나누어서 이 쟁점은 다음번에, 저희가 지금까지 법안 논의를 하면서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아 주시면 다시 한번 여야 간의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할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3분의 2 미만 추천은 논의를 안 하셨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나 찬성 토론이 없어서 제가 거론하지 않았던 건데요,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제대로……

○김한규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시지요.

○정춘생 위원 임미애 위원님이 찬성하셨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김한규 위원 정춘생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초의원선거의 정당 후보자를 의원 정수 3분의 2 미만으로 추천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인의 경우에 최소한 정당 3개 이상이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정당이 후보를 낼 거냐,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의 정당의 지지율과 다른 식의 왜곡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최대한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들도 들어와서 실제 득표수에 맞는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지역구에서 의원 정수 3분의 2 미만으로 추천하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시 확인 안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하실 말씀……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신설구가 3개나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서, 사실 오늘도 각 당에서 후보자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구도 모르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면접도 하고 있고 자기 지역구 유권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도 지금 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뽑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달라고 했던 것은 참정권을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유권자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여기서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최소한의 국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이 법안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 보니까 이 선거 때 적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정개특위에 인천 출신 민주당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의견도 전달 안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법안 심사를 먼저 하시고 선거구 확정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안 하시고 확정을 안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왜 선거구 확정이 진행 안 되느냐, 제가 여

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도의원 관련해서 중대선거구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배준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한테 물어봐요.

○소위원장 윤건영 일문일답이 아니고 질문할 것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게요.

○배준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를 시도의원들한테 적용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신지 그리고 위원회의 윤건영 위원장의 입장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것과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확정이라든지 이 문제가 진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배준영 위원님의 심경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해당 지역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되셨기 때문에 답답하시지요. 저도 답답합니다, 하루에 전화를 몇 통화 받는데요.

지금 정개특위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개특위의 소위 활동을 통해서 법안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고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는 2 플러스 2 회의, 즉 원내운영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플러스 2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고요.

문제는 2 플러스 2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개특위 회의 또는 소위 회의에서 선거구 확정을 논의하다가 2 플러스 2 회의로 넘긴 이유는 전체가 다 논의하면 효율성이나 신속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2 플러스 2 회의에서도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물론 합의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회의에서 전체 합의를 이룬 다음에 발표를 하자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존경하는 서일준 간사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2 플러스 2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문제의식, 하소연 등을 전달해서 빨리 결론을 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2 플러스 2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나 각 당 지도부를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되고 그러합니다, 위원님. 논의 자체를 멈추고 있거나 특정 안건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대선거구제……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방금 답변드렸는데 특정 안건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위원장님의 입장을 제가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가 돼 있지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이미 공개가 된 걸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배준영 위원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든지 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선거구 획정에 혹시 도움이 될까 봐 제가 참고하려고 그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야 4당이 합의한 부분이 있지요. 확대해 나가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미 그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announce)가 된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 플러스 2나 전체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이 그 문제로 인해서 걸려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결합돼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미 공개된 걸 제가 뭐 하러 이야기 또 하겠습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안건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원래 애초에 오늘은 여야가 각각 두 가지씩 안건을 올리기로 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전에 속도를 내도 2개 법안까지밖에 안 땀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안소위를 하면 오늘 예정돼 있던 세 번째 안건과 네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는 걸로 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산회입니까, 정회입니까? 오후에 하는 겁니까?

○이상식 위원 내일 합니까, 언제 합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후에 2 플러스 2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논을 해 보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예전에 논의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오후에도 속개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 의견을 충분히 받을 텐데요. 오후에 시간을 알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요 그 회의 이후에 여력이 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으면 속개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7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정춘생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환

법제국장 박세진